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6호, 2024. 10.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4336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자동차 부분) 044-215-4333, 4336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2. 19., 2007. 12. 31., 2009. 2. 4.> [전문개정 1981.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8., 2014. 2. 21., 2016. 3. 25., 2024. 5. 7.>

-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 5. "비거주자"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6.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 나. 제조자와「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 7. "공예창작품"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기술・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삭제<1999. 12. 3.>
-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9. 2. 12.>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14., 2014. 2. 21., 2014. 6. 30., 2015. 6. 30., 2015. 9. 7., 2016. 2. 5., 2016. 2. 19., 2017. 2. 7., 2018. 2. 13.,
 - 2018. 8. 7, 2018. 11. 6, 2019. 1. 15, 2019. 2. 12, 2019. 5. 7, 2020. 6. 30, 2021. 1. 12, 2021. 11. 12, 2022. 2. 15,
 - 2022. 4. 27., 2022. 6. 30., 2022. 7. 29., 2022. 12. 30., 2023. 4. 28., 2023. 6. 30., 2023. 8. 31., 2023. 10. 31., 2023. 12. 29., 2024. 2. 29., 2024. 4. 30., 2024. 6. 28., 2024. 8. 30., 2024. 10. 31.>
 -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 1) 수소추출설비
 -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
 - 1) 수소추출설비
 -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한다.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 1)「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 1) 수소추출설비
 -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4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 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신설 2021. 1. 12.>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30., 2015. 9. 7., 2016. 2. 5., 2021. 1. 12.>

-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 2. 반출 장소
-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 4.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1. 12. 31.]

[대통령령 제31383호(2021. 1. 12.)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2조의3 삭제 <1999. 12. 3.>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진주・별갑(鱉甲)・산호・호박・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전문개정 2015. 11. 27.]

제4조의2 삭제 <2007. 2. 28.>

제5조 삭제 <2017. 2. 7.>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6. 24.>

-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 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2, 2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 2015. 6. 30., 2023. 2. 28.>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제조장 소재지
- 3. 제조 폐지 연월일
-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 6. 신청 사유
-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2. 28.]

제7조 삭제 <1999. 12. 3.>

-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6. 2. 5., 2023. 2. 28.>
 -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3.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6.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반출되었거나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16. 2. 5.>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6. 2. 5.]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 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2024. 2. 29.>

-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3. 2. 28.>
-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경우: 보충·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나. 수탁자가 보충 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 다. 위탁 공임
-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제조 총원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해당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 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구성 비목(費目)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원재료 구입가격
 - 나. 관세
 - 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 · 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 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 마.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
 - 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 2. 제1호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 가. 국산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 나. 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외국환거래 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3. 2. 28.]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전문개정 2010. 2. 18.]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삭제 <2012. 2. 2.>

- ② 삭제<2012. 2. 2.>
-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2. 2.> [전문개정 2010. 2. 18.]
-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실제 이용한 홀 수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전체 홀 수

[본조신설 2019. 2. 12.]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9. 20., 2012. 2. 2.>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납세된 때의 가격
-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 4.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양수한 금액(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과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를 합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6.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7.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물품의 가격
-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2. 2. 2.>

[제목개정 2012. 2. 2.]

-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을 뺀 금액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2, 28.>
 -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제조장의 소재지
 - 3. 구입연월일
 -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용도 및 사용장소
 - 3. 수출 예정시기, 수출지 및 수출 예정 세관명
 -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구성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다.<개정 2012. 2. 2., 2023. 2. 28.>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된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4조 삭제 <1999. 12. 3.>

-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 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
 - 2. 4., 2010. 12. 30.>
 - 1. 무상으로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본조신설 1981. 12. 31.]

-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21. 1. 5., 2023. 2. 28.>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 3.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 4.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 5. 자진납부세액
 -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09. 2. 4.>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⑤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개정 1981. 12. 31., 2004. 3. 17., 2009. 2. 4., 2021. 1. 5.>
- 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 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제5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전문개정 2010. 2. 18.]

- 제16조의2(총괄납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2. 18.>
 - 1. 법 제5조제1호다목에 따라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 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개별 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 3.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는 경우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장소
- 3. 총괄납부 신청 사유
- 4. 그 밖의 참고사항
- ③ 삭제<2007. 12. 31.>
- ④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청일부터 기산(起算)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세법에 따른 경정조사 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 이상 발견된 경우
-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2. 18.>

[본조신설 1994. 12. 31.]

-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 총괄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철회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총괄납부 포기 사유
 - 3. 그 밖의 참고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이하 이 항에서 "미납세반출자 "라 한다)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
 - 가. 미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
 - 나. 반입자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 다. 미납세반출한 물품
 -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2.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① 법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가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 2. 저유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 ②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5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 가. 제조자등의 인적사항
 -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
-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 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면 납세담보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9. 2. 4.>
 - ②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개정 2007. 12. 31., 2009. 2. 4., 2022. 2. 15.>
 - 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 기한까지 해당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1981. 12. 31.]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① 삭제 <2012. 2. 2.>

-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 2. 2., 2013. 6. 28.>
-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 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 3. 추계결정·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 는 방법
-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제목개정 2012. 2. 2.]

제18조의2 삭제 <2007. 2. 28.>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 3. 반출할 물품의 명세
- 4. 반입장소
- 5. 반입자의 인적사항
- 6. 반출 예정 연월일
-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8. 신청 사유
- 9.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한정한 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
- 2.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 3.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5. 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 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還入)하는 것
- 6.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8. 별표 1 제6호아목의 물품으로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9. 별표 1 제5호가목의 물품으로서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것
- 10. 별표 1 제6호의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 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제3항제5호의 경우: 반입지의 하치장 설치신고 확인서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2. 제3항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 ⑥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반출하려는 경우에도 제4항 및 제5항과 같다.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 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3. 2. 28.>

[전문개정 2010. 2. 18.]

-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 ·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 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 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여야 한다.

- 1. 반출자의 인적사항
- 2. 반출장소
- 3. 반출연월일
- 4. 반입자의 인적사항
- 5. 반입장소
- 6. 자동차등록 연월일
- 7.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 8. 면세 사유
- 9. 그 밖의 참고사항
-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23. 2. 28., 2023. 5. 23.>
-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보훈등록증
-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 제20조(반입신고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14. 2. 21, 2023. 2. 28.>
 - 1. 신고인의 인적사항
 -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3. 반입물품의 명세
 - 4. 반입장소
 - 5. 반입 사유
 - 6. 반입연월일
 - 7. 반출자의 인적사항
 -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9.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개정 2010. 5. 4., 2013. 2. 15., 2016. 2. 5., 2023. 3. 14.>
 -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 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 4.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 5.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지방세법」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출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 나.「지방세법」제54조제1항제1호(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 다. 「지방세법 시행령」제62조제3호에 따라 반출되어 폐기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폐기 사실 확인 서류
 - 라.「지방세법 시행령」제63조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 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영세율(零稅率)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
-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 2.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 3.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④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
-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

- 제21조(멸실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3. 멸실물품의 명세
 -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6.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제조장의 소재지
-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 4. 멸실물품의 명세
-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반출 장소
-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 4. 수출처 또는 군납처
- 5. 수출세관명
- 6. 수출자의 인적사항
- 7. 반출 예정 연월일
- 8. 수출증명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 9.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2조의2 삭제 <1999. 12. 3.>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2. 3., 2023. 2. 28.>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반출 장소
-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 4. 반입장소
- 5. 반입자의 인적사항
- 6. 반출 예정 연월일

- 7. 신청 사유
- 8.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 부장관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 2. 3.>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 3. 면세 승인 연월일
- 4.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
- 5. 신청 사유
- 6. 그 밖의 참고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3.>

- 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 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부 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명, 유류의 종류별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받고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해당 석유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3. 23.>
 - ② 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해당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0.>
 -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0. 12. 30.]

- 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 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30.]

-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교관등(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 2. 주한외교관등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주한외교관등이 사망한 경우
-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2. 3.]
-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23. 2. 28.>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반출 장소
 -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 4. 반입장소
 - 5. 반입자의 인적사항
 - 6. 반출 예정 연월일
 -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8. 신청 사유
 - 9.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5.>

-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 2. 귀금속 제품
- 3. 골패(骨牌)와 화투류
- 4. 고급 가구
- 5. 삭제 < 2017. 2. 7.>
- 6. 고급 융단
- 7. 고급 가방

[전문개정 2010. 2. 18.]

-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만 이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 3. 면세판매하려는 물품명
 -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지정번호
 -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 3. 대표자의 인적사항

- 4. 면세판매할 물품명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 3.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밖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 5. 해당 판매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6. 제1항의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려는 경우
-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資力)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첨부하고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 1.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장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 2. 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 및 출국 관련 사항
 - 3. 면세구입물품의 명세
 - ② 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 여부 또는 세액의 징수 내용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 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적는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 구입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의 소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7.>
 - ④ 세관장은 매 분기분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 서장에게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구입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해당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그 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 ⑥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송부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대조·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2. 15., 2023. 2. 28.>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반출 장소
-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 4. 반입장소
- 5. 반입자의 인적사항
- 6. 반출 예정 연월일
-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 보고서) 제출기한
- 8. 신청 사유
- 9.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10. 12. 30., 2011. 12. 8., 2014. 2. 21., 2016. 2. 5.>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 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나.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학교로 한정한다)에 기증되는 물품다. 삭제<2016. 2. 5.>
- 1의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법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 청에 필요한 서류
-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6. 관수용(官需用) 물품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4. 17., 2012. 12. 21. 2018. 12. 31., 2021. 4. 6.>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삭제<1999. 12. 3.>
-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개정 2010. 2. 18.>

[본조신설 1994. 12. 31.] [제목개정 2010. 2. 18.]

제31조의2 삭제 <1994. 12. 31.>

제32조(의식용품 등)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본조신설 2014. 2. 21.]

제32조의3 삭제 <2005. 2. 19.>

제32조의4 삭제 <2005. 2. 19.>

-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21. 2. 17., 2023. 2. 28., 2024. 2. 29.>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물품의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 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 라)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 3.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 나.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 4.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관세법」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개별소비세 또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 5.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자동차관리법」제 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폐기하려는 물품의 명세
- 3. 폐기 사유
- 4. 반입 사유 및 반입연월일
- 5. 그 밖의 참고사항
- ④ 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따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승용자동차를 대여한 기간의 합을 계산할 때 시간단위로 해당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합산해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신설 2019. 2. 12.>
- ⑤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2. 21, 2019. 2. 12.>

-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1. 6. 1.>
 -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 ③ 삭제<2019. 2. 12.>
 -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란「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 ② 삭제<2010. 12. 30.>
 - ③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0.>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 3. 신청 사유
 - ④ 법 제19조의3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 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개정 2010. 12. 30.>

[전문개정 2010. 2. 18.]

-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 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16. 2. 5.>
 -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공제의 경우: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 2.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 2. 15.>
 -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같은 법 제1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 2. 제1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아닌 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 2. 5., 2022. 2. 15.>
 - ④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 2. 15., 2013. 3. 23.,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22. 2. 15., 2024. 2. 29.>
 -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 2. 삭제 < 2016. 2. 5.>
 -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라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5.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제30조제2항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 다.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 라.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의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 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 마.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 서
 - 바.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 6.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7. 법 제20조의3제3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법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훼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 다. 법 제20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세액이 초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라. 법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경우: 제20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2022. 2. 15., 2023. 2. 28.>
- ⑥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을 말한다.<개정 2016. 2. 5., 2022. 2. 15.>
- ⑦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 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2022. 2. 15.>
- ⑧ 법 제20조제7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의 관할 세관장이 징수한다.<개정 2016. 2. 5., 2022. 2. 15.>

제34조의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5호·제9호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 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1. 26.>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 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 용으로 사용되는 것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삭제 < 2021. 2. 17.>
-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 2. 17.>
-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6. 28., 2021. 2. 17.>
-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4.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7. 삭제 < 2021. 2. 17.>
- ⑥ 삭제<2012. 2. 2.>
-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21. 2. 17.]

- 제3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2008. 2. 29., 2009. 2. 4., 2010. 12. 30., 2023. 2. 28.>
 - ②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 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2. 18., 2013. 6. 28.>
 -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해당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31., 1999. 12. 3., 2008. 2. 29., 2009. 2. 4., 2010. 12. 30., 2023. 2. 2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23. 2. 28.>
 - ⑤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1.>

[전문개정 1984. 5. 1.]

-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
 -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
 -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2014. 2. 21.>
 -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 2. 입장권의 사용 상황
 - 3. 세액
 - 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종류・수량・금액 및 구입연월일
 -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신설 2009. 2. 4., 2021.
 - 1. 5.>
 - 1. 영업연월일
 - 2.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및 세액 [제목개정 2010. 2. 18.]
-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법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 제37조(명령 사항 등)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 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9. 2. 4.>
 - ② 삭제<2002. 12. 11.>
 - ③ 삭제<2002. 12. 11.>
 - ④ 삭제<1999. 12. 3.>
 - ⑤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2. 18.>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세원(稅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1994. 12. 31.] [제목개정 2010. 2. 18.]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 가.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 나.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 신고 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 나. 신고・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부칙 <제34976호,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